

테크노경영대학원 내규

시행 : 2025. 3.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내규는 「경희대학교대학원학칙(이하 “대학원 학칙”이라 한다)」 및 「경희대학교대학원 학칙시행세칙(이하 “학칙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테크노경영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과정)

- ① 본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을 둔다.
- ②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한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계약학과의 입학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조(학과·전공 및 입학정원)

본 대학원 학위과정의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은 [별표1]과 같다.

제2장 입학

제4조(학생선발)

본 대학원의 학생선발은 신입학, 편입학, 재입학으로 구분하며, 비학위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조(입학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 학기 개시일로 한다.

제6조(입학전형)

본 대학원의 학위과정의 입학전형방법은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에 의한 일반전형과 구술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특별전형으로 하며, 그 세부사항은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지원자격)

- ① 본 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춰야 하며, 소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1. 국내·외 4년제 정규 대학교에서 정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정규 학사학위 취득 예정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 ② 편입학은 국내·외 대학원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에서 1개 학기 이상 이수하고 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 ③ 재입학은 본 대학원에서 1개 학기 이상 성적을 인정받은 후 제적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2회 이상 제적된 자 및 징계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 ④ 편입학, 재입학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8조(정원 외 입학)

정원 외 입학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에 따른다.

제9조(입학허가)

-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 기일 내에 입학금 및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학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입학전형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합격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 한다.

제3장 등록

제10조(등록)

학생은 소정의 등록금을 매 학기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수업연한 이후 등록)

수업연한 동안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전부 취득하지 못하였거나, 비논문학위 취득을 위해 다음 학기에 추가로 등록하여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6학점 미만 : 등록금의 1/2
2. 6학점 이상 : 등록금 전액

제12조(입학금 및 등록금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이미 납부한 입학금 또는 등록금을 반환한다.

1. 입학금 또는 등록금이 과오납 된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3.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5.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6.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3조(입학금 및 등록금 반환기준)

입학금 및 등록금 반환기준은 대학원 학칙에 따른다.

제4장 수업

제14조(수업연한)

- ①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학기(2년)로 한다. 다만, 재외국민 및 외국인 대상 MBA과정과 특정기업의 계약학과인 글로벌경영학과(MBA)의 수업연한은 3학기(1년 6개월)로 할 수 있다.
- ② 편입학자는 전적대학원에서 이수한 학기 인정을 원칙으로 하되, 본 대학원에서 최소 2개 학기 이상을 수학하여야 한다.
- ③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8조에 따라 개설되는 계약학과의 수업연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5조(재학연한)

본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다.

제16조(수업방법)

- ① 본 대학원의 수업은 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과정의 특성상 주간·주말 수업을 운영하거나, 계절학기 수업을 운영할 경우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전공의 이수)

- ① 학생은 각 학과(전공)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② 설치 학과에 개설된 전공 내에 분야별로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개설과목)

본 대학원의 교과목은 학과 또는 전공에서 정한 교과목에 한하여 개설하되, 필요시에는 공통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제19조(수강신청)

- ① 매학기 수강학점은 논문학점을 제외하고 9학점(특정기업의 계약학과인 글로벌경영학과(MBA)의 경우 최대 12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 ② 수강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인터넷을 통하여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
- ③ 수강신청 과목의 정정은 개강 후 정해진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제20조(출석인정)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하였을 때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고, 교강사가 이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간주할 수 있다.

1. 공무 출장(학기당 3회에 한하여, 소속 기관장의 증명서 제출 필요)
2. 질병(3주 이내에 한하여, 병·의원장의 진단서 제출 필요)

제21조(교과목 개설)

교과목 개설을 위한 최소 수강인원은 5인으로 한다. 다만, 수강인원 5인 미만인 강좌 중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설할 수 있다.

제22조(출·결강 관리)

- ① 교강사는 수업일수를 준수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강하게 될 경우 사전에 학생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② 교강사는 휴강하게 될 경우, 휴강 및 보강계획서를 제출하고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학적변동

제23조(휴학)

- ①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학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 ② 휴학기간은 한 학기 또는 1년 단위로 하되, 총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특별휴학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휴학은 병역의무 이행기간에 해당하는 학기까지 휴학이 가능하

며 입영통지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2. 해외파견으로 인한 휴학은 해외파견기간에 해당하는 학기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해외근무 사실이 확인 가능한 재직증명서 또는 인사팀 확인서면을 제출하여야 함
3. 전근(경기도 외 지방발령)으로 인한 휴학은 최대 2학기까지 가능하며, 근무지 변경이 확인 가능한 인사발령지 또는 인사팀 확인 서면을 제출하여야 함. 다만 전근기간이 2학기를 초과할 경우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허가할 수 있음
4. 본인의 출산으로 인한 휴학은 최대 2학기까지 휴학이 가능하고 출산(예정)증명서 또는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5. 기타 특별휴학으로 인정되는 자는 본 대학원장의 승인하에 결정한다.
④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학기 개시일로부터 21일 이내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의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 (3차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첨부)
 2. 군휴학하는 경우
 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인정한 경우

제24조(복학)

- ① 휴학 후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복학을 신청하여 본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② 필요한 경우 학기 개시일로부터 21일까지 연장하여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25조(제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본 대학원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제적한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등록금을 소정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징계 등의 사유에 의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제적 의결된 자

제26조(전과·전공변경)

- ① 학과변경(이하“전과”라 한다) 또는 전공 변경은 1회에 한하여 지정된 기간에 할 수 있으며, 마지막 학기에는 신청을 불허한다.
- ② 전공 또는 학과의 통·폐합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 횟수의 예외로 할 수 있다.
- ③ 전과 또는 전공을 변경한 경우 이수과목 및 전공을 고려하여 재학 학기를 조정할 수 있다.
- ④ 편입학·재입학자는 전과를 불허한다.

제6장 학점 및 성적

제27조(수료학점) 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은 24학점으로 한다.

제28조(학점 인정)

- ①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 교과목의 총 수업시간의 3분의 2이상 출석하여야 하며, 해당 과목의 성적이 C-(1.7)이상이어야 한다.
- ② 편입학생이 전적 대학원의 동일 또는 유사 전공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과장의 확인을 거쳐 최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③ 편입학생은 해당 학과(전공) 내에서 최소 12학점을 취득해야 하며, 이 경우 논문이수 또는 논문대체 학점은 별도로 취득하여야 한다.

제29조(이수과목 및 성적)

- ①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공 교육과정에서 지정한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의 편성은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 ② 학위취득에 필요한 전 과목 평균성적은 B-(2.7) 이상이어야 한다.

제30조(성적평가)

- ①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성적 등급별 분포는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B+(3.3) 이상 90% 이내(A+는 20% 이내)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강좌는 상기 비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31조(타 대학원 과목 이수)

- ① 본 대학원 이외의 본교의 타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과장의 동의와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9학점 범위 내에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 ② 본 대학원 학생이 타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금은 본 대학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장 학위논문

제32조(논문지도)

- ① 석사과정 3기 등록을 마친 자로서 논문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는 학과장을 통하여 학위지도교수를 배정받고 논문 예비계획서를 소정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 및 외국인 MBA과정과 수업연한을 따로 정하여 운영하는 계약학과의 경우에는 논문 예비계획서 제출 시기를 별도로 정한다.

제33조(학위지도교수)

- ① 학위지도교수는 본교의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타교 전임교원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 중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를 학위지도교수로 선정할 수 있다.
- ② 학제간 학위지도교수가 필요한 경우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공동 학위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제34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로서 취득학점의 총 평균평점이 B(3.0) 이상인 자
 2. 논문예비계획서를 제출하고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로서 논문1 및 논문2를 모두 이수한 자
 3. 당해학기 졸업예정자

제35조(학위청구논문 제출서류 및 시기)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학위논문제출 승인서 1부
2. 학위논문지도결과 보고서 1부
3. 성적증명서 1부
4. 심사용 논문 3부

제36조(논문심사위원 위촉)

- ① 심사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원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타 대학교 전임교원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학위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 ② 심사위원은 학위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외부 심사위원은 1인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본 대학원장은 학위지도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 중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위촉한다.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를 주관하되, 의결에 있어서는 타 심사위원들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제37조(논문심사)

- ① 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4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하며, 구체적인 일정과 진행 방법은 과정별로 정한다.
- ② 논문심사 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심사하며, 평균 80점 이상일 경우에 합격으로 처리한다.
- ③ 논문심사에서 불합격된 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심사위원장은 논문의 심사결과보고서를 논문심사 후 지체없이 본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학위논문제출)

논문심사를 통과한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학위지도교수의 날인을 받아 하드커버로 제본한 논문(소정 부수)을 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논문과목)

논문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는 교과목 논문1, 논문2를 각각 3기, 4기에 순차적으로 수강신청하여 이수해야 한다. 단 재외국민 및 외국인 대상 MBA과정과 계약학과 과정의 경우 논문1, 논문2의 이수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40조(비논문학위)

- ① 학위취득은 논문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논문학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논문대체과목을 추가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② 학과별 논문대체과목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학과의 교육과정시행세칙에 이를 명시한다.

제41조(논문대체과목)

논문대체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수료학점외에 6학점을 추가로 이수한 경우 이를 논문 제출과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한다.

제8장 학위수여

제42조(학위수여 및 종별)

- ① 본 대학원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1. 논문심사 통과 또는 논문대체과목(6학점) 이수
 2. 각 과정별 수업연한 이상 등록
 3. 수료학점 이상 취득
 4. 총 평균성적 B-(2.7) 이상 취득
 5. 각 학과(과정)별 교육과정시행세칙에 따라 교육과정 이수

6. 졸업연구 통과(학위논문심사를 거쳐 졸업예정인 자, 재외국민 및 외국인MBA과정 제외)
② 위 제1항의 요건 중 제1호, 제6호를 제외한 모든 과정을 충족한 자는 수료처리한다.
③ 본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의 종별은 [별표 1]과 같다.
④ 비학위과정 이수자에게는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9장 학생지도 및 장학금

제43조(학생의 의무)

본 대학원 학생은 학내 제 규정을 준수하고 본 대학원 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44조(징계)

- ① 학생이 본 내규를 포함한 학내 제반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한다.
② 징계의 종류는 견책, 근신(근로봉사),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③ 견책, 근신(근로봉사), 유기정학 처분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행하며, 무기정학, 제적 처분은 본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행한다.

제45조(장학금 지급기준)

- ① 장학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별표 2]에서 정한 장학금의 수혜요건이 갖춰진 자
2. 총장 또는 본 대학원장이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3. 기타 본 대학원 발전에 기여한 자
② 장학 혜택을 받은 학기에 미등필 휴학자, 징계를 받은 자, 수업연한을 초과한 자는 장학 수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6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7조(장학금의 이중수혜)

- ① 장학금의 이중수혜는 허용하지 않는다. 단, 등록금 범위 내에서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우회 활동 장학 등 등록금지원과 무관한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장학금과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제48조(장학생의 선정)

- ① 장학생은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선정할 수 있다.
② 신(편)입학자가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입학 전 소정의 기간내에 장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별표 2]에서 지정한 장학 중 매학기 확인이 필요한 장학의 경우 학기별 소정의 기간내에 장학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장학금의 지급방법)

장학금은 다음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1. 등록 전 : 등록금고지서 감면처리
2. 등록 후 : 학생 명의로 된 금융기관 계좌이체

제10장 외국인 학생

제50조(입학전형)

- ① 외국인의 입학전형은 수학능력과 재정능력 심사로 한다.
- ② 수학능력과 재정능력은 입학지원 시 제출서류를 근거로 심사한다.

제51조(지원서류)

외국인이 입학허가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학사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52조(입학전형 시기)

외국인에 대한 입학전형은 수시로 시행한다.

제53조(외국인 등록)

- ① 본 대학원에 수학할 목적으로 입국한 자가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 ② 국내 체류기간 중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관할 구청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4조(문제학생에 대한 조치)

외국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대학원장은 이를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보고한다.

1. 입학허가 후 또는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거나 휴학한 경우
2. 출결사항이나 학업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유학생활을 계속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3. 제적, 행방불명 또는 기타 사유로 유학 목적이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불법취업 등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거나 국내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55조(외국인 학생 보험가입 의무)

외국인 학생은 입학 후 졸업시까지 국민건강보험에 당연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장 직제

제56조(구성)

본 대학원에는 대학원장, 부대학원장, 학과장 등을 두며, 행정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57조(학사운영위원회)

- ① 본 대학원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대학원장과 부대학원장, 학과장, 행정실장, 행정직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본 대학원장으로 하며, 간사는 행정직원으로 한다.
 -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과 졸업 등 주요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2. 입학전형 계획 수립 및 선발에 관한 사항
3. 장학제도 운영 및 심의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제안하는 사항

제12장 보칙

제58조(보칙)

본 내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희대학교대학원학칙」 등 본교 제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08년 5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08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13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4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내규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영전공의 재적생은 별표1의 글로벌경영학과 서비스경영전공으로 전공변경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5항에 따른 해당학과 주임교수 동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9조, 제14조제2항, 제2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② 2016년 이전 입학생이 수업연한을 4학기로 변경하여 졸업을 원할 경우, 소정의 사유서를 제출하여 본 대학원장의 승인에 의해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근거하여 졸업하는 경우, 등록금은 잔여학기인 한학기의 등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2016년 이전 입학생은 별도의 고지가 없는 한 졸업 시까지 자연인상분의 등록금을 반영하여 고지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6학년도 이전입학생은 4기에 조기졸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

을 받은 자에 한하여 제9조 제1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 제2항의 2, 제9조 제5항, 제24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2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조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자의 전공은 입학 시점의 것을 적용한다.
② 부칙(2016.3.1일자 시행)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경과조치의 제9조(수업연한), 제14조 제2항(등록), 제24조 제1항(논문지도교수 및 교수배정)은 내규 개정에 따라 제9조는 제22조 제1항으로, 제14조 제2항은 삭제, 제24조 제1항은 제41조 제1항으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② 부칙(2017.9.1일자 시행) 제2조에서 정한 경과조치의 제3조 제2항의 2, 제9조 제5항, 제24조 제5항은 내규 개정에 따라 각각 제7조 제1항 제2호, 제22조 제6항, 제41조 제2항으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내규의 제35조(수료학점), 제36조(학점인정)제2항, 제4항, 제44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제3호, 제57조(학위수여 및 종별) 제1항 제3호, 제6호, 제10장(종합시험)은 2020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 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 2조(경과조치) ① 본 내규의 제 10장 종합시험의 폐지 및 제57조(학위수여 및 종별) 1 항 6호의 변경에 따라 2023.10.1.기준 본 대학원 재학생 중 2024.03.01.이후 졸업하는 자는 종합시험을 면제하기로 한다. 다만, 이 경우 졸업연구를 수행하여 통과한 자에 한해 학위수여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 ② 본 내규의 [별표1] 1.테크노경영대학원 학과·전공·학위종별 및 입학정원에 의거 2024.03.01.부로 복지경영학과가 심리상담경영학과로 변경함에 따라 2023.10.1.기준 복지경영학과 재학생은 정해진 기간 중 소속변경 신청에 의거 심리상담경영학과로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본 내규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테크노경영대학원 학과·전공·학위종별 및 입학정원

1. 테크노경영대학원 학과·전공·학위종별 및 입학정원

과정	학과	전공	학위종별	입학정원
석사학위과정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영	경영학석사	87명
	건설안전경영학과	건설안전경영	공학석사	
	스포츠경영학과	스포츠경영	체육학석사	
	심리상담경영학과	심리상담경영	경영학석사	
	디지털융합학과	디지털융합	공학석사	

2. 계약학과 과정 학과 · 전공 · 학위종별 및 입학정원

과정	계약학과	전공	학위종별	입학정원
석사학위과정 (계약학과)	건설안전보건학과	건설안전보건	공학석사	-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영	경영학석사	
	글로벌경영학과(MBA)	글로벌경영	경영학석사	
	스마트기술경영학과	스마트기술경영	경영학석사	
	미래혁신경영학과	미래혁신경영	경영학석사	
	AI기술경영학과	AI기술경영	경영학석사	
	반도체융합학과	반도체융합	공학석사	

3. 재외국민 및 외국인대상 학위과정

과정	학과	전공	학위종별	입학정원
재외국민 및 외국인 MBA 과정	글로벌경영학과	기업경영	경영학석사	-
		마케팅		
		미디어경영		
		금융경영		
		예술경영		

		스포츠경영		
--	--	-------	--	--

[별표 2]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

장학금의 종류		지급대상	장학내용
총장장학		• 총장이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조교장학		• 조교에 관한 규정에 의거함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
성적우수장학		• 재학생 중 해당학기에 2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	수업료의 일부
모범장학	A	• 원우회 회장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
	B	• 원우회 임원 (5명 이내)	수업료의 일부
	C	• 계약학과 운영 및 발전에 기여한 자	수업료의 일부
경희가족장학 (일반석사과정에 한함)	A	• 경희학원, 경희대학교 및 경희사이버대학교에서 2년 이상 재직중인 전임교원 및 정규직원	등록금 전액
	B	• 의료원 및 병설학교 전임교원 및 정규직원	수업료의 50%
	C	• 경희대학교 전임교원 및 정규직원의 배우자 및 자녀	수업료의 50%
경희동문장학 (일반석사과정에 한함)	A	• 본교 동문	수업료의 30%
	B	• 경희사이버대학교, 본교 평생교육원 및 글로벌미래교육원 학점은행제 동문 • 본 대학원 총동문회의 추천을 받은 자	수업료의 20%
학·군제휴장학		• 학·군 제휴 협약에 의하여 입학하는 현직군인 및 군무원	수업료의 40%
공무원장학		• 현직 공무원	수업료의 40%
특별장학		•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가계곤란자로서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	수업료의 일부
기여장학		• 본 대학원 발전에 기여한 자	수업료의 일부
협약장학		• 본 대학원과 기관과의 협정에 의해 입학한 자	수업료의 20%

국가고시장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리사시험, 공인회계사시험이나 이와 동등한 국가자격시험 합격자 	수업료의 30%
한국어역량 우수장학(중문MBA 과정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학생 중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역량을 취득하여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자 	수업료의 일부
비학위과정장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학위과정 지원자 중 본 대학원장이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득한 자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 감면혜택이 중복일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높은 장학만을 인정한다. 다만, 조교장학 및 모범장학은 중복 수혜를 허용할 수 있다.

※ 경희가족장학, 학·군제휴장학, 공무원장학, 협약장학은 재직 확인을 위하여 매 학기 해당 서류 제출